#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9

발의연월일: 2024. 6. 10.

발 의 자:민형배·이정문·김영배

조인철 • 이수진 • 문정복

이연희 · 김용민 · 어기구

신정훈 • 박홍배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자 합니다.

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·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없습니다.

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한계가 있습니다.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 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 았습니다.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·자문 등도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
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

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.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. 방송의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10조 및 제19조).

법률 제 호

##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6호 중 "위원의"를 "위원, 전문위원의"로, "아니한"을 "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사람의"를 "사람, 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위원회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의"로 한다.

- 7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제11조의 위원회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제19조제1항제6호 중 "위원의"를 "위원, 전문위원의"로, "아니한"을

"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사람의"를 "사람, 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의"로 한다.

- 7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제21조의 심의위원회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 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제3조(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

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 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	제10조(결격사유) ①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
은 위원이 될 수 없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	6
률」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	
인수위원회 <u>위원의</u> 신분을 상	<u>위원, 전문위원의</u>
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<u>아</u>	
<u>니한</u> 사람	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
	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
	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
	지나지 아니한
<u>&lt;신 설&gt;</u>	7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
	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
	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
	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
	지나지 아니한 사람
<u>&lt;신 설&gt;</u>	8. 제11조의 위원회 소관사무와
	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
	담당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
	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
	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
	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·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<u>사</u> 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### ③ (생략)

- 제19조(심의위원의 결격사유) ① 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수 없다.
  - 1. ~ 5. (생략)
  - 6. 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<u>위원의</u>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<u>아</u> 나한 사람

<신 설>

②
사람,
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에
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
한 사람 및 같은 항 제8호에
따른 위원회 소관사무와 밀접
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
한 정무직공무원의
③ (현행과 같음)
세19조(심의위원의 결격사유) ①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6
<u>위원,</u> 전문위원의
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
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
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
지나지 아니한
<u> 7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</u>
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
다서우 이치어 가무이나 고무

<신 설>
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·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<u>사</u> 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- <u>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</u> <u>지나지 아니한 사람</u>
- 8. 제21조의 심의위원회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 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 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2 -----

작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의-----

\_\_\_\_\_\_